

#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도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2월 13일  
도시·교통위원회

## 1. 심사경과

- 의안번호: 2019 - 84
- 제 안 자: 강서구청장
- 제안일자: 2019년 11월 5일
- 회부일자: 2019년 11월 14일
- 상정일자: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제5차 회의 상정·의결(2019. 12. 13.)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 □ 제안이유

구민의 안전증진과 안전문화 형성을 이루기 위한 강서구 안전도시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ISCCC)가 권장하는 **안전도시<sup>1)</sup>** 요건을 갖추어 생활이 편안한 안전환경도시 강서를 구현하고자 함.

- 
- 1) 안전도시(Safe Communities) 개념: 1989년 9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제1회 사고와 손상예방 세계학술대회에서 제안
-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선언
  - 지역사회가 완전히 안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사고로 인한 손상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의미

### 3.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책무 등(안 제1조~제4조)
- 나.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의 범위(안 제5조)
- 다. 강서구 안전도시위원회 설치, 기능 및 구성 등(안 제6조~제10조)
- 라.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11조)
- 마.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시행규칙(안 제12조~제13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5조, 「지방자치법」 제9조·제22조
-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 다. 합의사항: 해당사항 없음
- 라. 입법예고(2019. 9. 25. ~ 2019. 10. 15.) 결과: 의견 없음

### 5. 전문위원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광희)

#### 가. 제정취지

- 이 조례안은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시키고 주민들이 안전의식에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ISCCC)<sup>2)</sup>가 권장하는 국제안전도시 요건을 갖추어 강서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하도록 안전도시의 구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2) 1989년 이후 WHO 협력 안전도시 사업은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에서 주도하여 WHO와 협력센터로서 전세계 인증센터의 중심 역할 담당하였으며 2015년 지역사회 안전증진에 관한 협력센터인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International Safe Community Certifying Center, ISCCC)로 법인을 설립하고 현재 300개 이상의 커뮤니티와 23개의 국제안전커뮤니티 지원센터와 협력관계에서 국제안전도시 인증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나. 제정내용

- 이 조례안은 강서구 안전증진과 안전문화 형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3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됨.

### 1) 안 제1조~제4조: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 등 규정

- 안전도시: 이미 안전한 도시가 아니라 안전해지기 위하여 지역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
- 안전증진: 구성원들의 태도, 행동 및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들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내기 위해 계획한 모든 노력
- 손상: 불의의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 등으로 초래되는 신체·정신·건강상의 해로운 결과
-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권리와 책무

### 2) 안 제5조: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의 범위 규정

-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종합계획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 안전도시 관련 정책 개발 및 손상감시체계 구축 등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 안전도시 사업의 지원에 대한 제반 사항

### 3) 안 제6조~제10조: 강서구 안전도시위원회 설치, 기능 및 구성 등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안전도시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 선정 및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 4) 안 제11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안전도시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 위원을 10명 이내로 구성
- 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살예방 등 전문 분야별 위원회 운영

5) 안 제12조~제13조: 위원회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시행규칙

- 위원회 위원 및 실무위원의 임기 해촉, 제책·기피·회피, 수당 및 위원회 존속기한 등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름

다. 종합의견

- 이 제정 조례안은 강서구민의 안전문화 형성 및 안전증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구와 주민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철저한 준비와 사후 조치를 통해 손상의 예방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유도하는 등 구민 생활안전을 도모함으로써 제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데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 다만,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sup>3)</sup>과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ISCCC)가 권장하는 공인 기준<sup>4)</sup>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3)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1차(2005~2009)	2차(2010~2014)	3차(2015~2019)	4차(2020~2024)
·자연재난대응 중심 ·하향식(계층제) 명령과 통제시스템 ·통합적 재난대비책 구축 ·신속한 재난대응책 강화	·전 재해적 접근 ·지방자치단체·국민·기업 등 다양한 부문의 참여 ·안전문화 강조(국민의 안전의식 제고) ·계층제 강화+ 네트워크 활용(협력적 거버넌스 중요)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현장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 ·재난안전 예방 인프라 확충 ·분야별 창조적 안전관리 ·생활밀착형 재난관리정책	·포용적 안전관리 ·예방적 생활안전 ·현장중심 재난대응 ·과학기술 기반 재난관리

4)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International Safe Community Certifying Center, ISCCC) 공인 기준:

- ①지역공동체에서 안전증진에 책임이 있는 각계각층으로부터 상호 협력하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 ②남성과 여성, 모든 연령이 모든 환경, 모든 상황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 ③고위험연령과 고위험 환경 및 고위험 계층의 안전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 ④프로그램은 사용가능한 모든 근거를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⑤손상의 빈도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 ⑥손상예방 및 안전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 ⑦국내외적으로 안전도시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 안전도시조례가 지역 및 주민의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법제도임에도 불구하고 ISCCC의 안전도시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안전도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 매년 공인 및 재공인사업 추진에 필요한 용역비 등 적지 않은 제반 비용의 지속적인 투입이 예상되는 바,
- 안전도시 인증은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성격으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융합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고 국제안전도시 인증사업의 효과, 국제안전도시 인증 수행기관의 공신력 및 신뢰성, 연구용역비 등 국제안전도시 인증사업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6. 토론요지: 생략**

## **7. 심사결과: 원안가결**